

# 한부모가족정책의 실태와 정책제언

## States and Implications of Policies for Single-parent Families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연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본 고는 현행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을 소득지원, 주거지원, 자립지원, 의료지원, 양육지원, 정서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정책을 살펴본다. 이어서 현행 정책의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원만한 자녀양육을 지원할 수 있기 위함이다. 정책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하여 많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원수준 또한 크게 높아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부모가족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 못하고 있음은 한부모가족 대상 실태조사 등에서 잘 제시되어 있다. 이에 향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원만한 자녀양육을 위한 정책추진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1. 서론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정책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발생된 전쟁미망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1955년 모자보호시설(당시 부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 등에 기인된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은 이혼·별거·사별에 의한 가족을 증가시켰고, 많은 한부모가족을 출현토록 했다.

한부모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985년 848천 가구에 머물던 한부모가족은 2010년 1,594천 가구로 약 2배 늘어났다. 한부

모가족 형성요인별로 살펴보면,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족은 1985년 50천 가구에서 2010년 523천 가구로 약 10배 증가하였고, 사별에 의한 한부모가족은 동 기간에 443천 가구에서 474천 가구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미혼한부모가족은 101천 가구에서 185천 가구로 약 2배 증가하였다.<sup>1)</sup>

한부모가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발전을 살펴보면, 모자복지법이 1989년에 제정되었고, 모자복지법은 2002년에 모부자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모부자복지법은 2007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보다 발전

1) 별거상태의 유배우 한부모가족은 1985년 254천 가구에서 2010년 413천 가구로 증가하였음.

적으로 개정되었다. 즉, 모자가정, 부자가정은 한부모가족으로 통칭하게 되었으며,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130%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2010년 현재 107,775세대의 277,577명이다. 즉, 미혼모가족(1,054세대의 3,175명)을 포함한 모자가족 81,299세대의 208,100명을 대상으로, 미혼부가족(299세대의 653명)을 포함한 부자가족 26,112세대의 68,537명을 대상으로, 조손가족 364세대의 904명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2012년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전국적으로 123개소(생활시설 121개소, 이용시설 2개소)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 및 자립지원 상담과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부모가족은 열악한 생활환경과 좋지 않은 건강상태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병행하고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한부모가족의 취약·위기성의 지속은 이들 가족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됨과 동시에 (손)자녀들에게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경우는 발생원인의 특성상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는 현행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을 소득지원, 주거지원, 자립지원, 의료지원, 양육지원, 정서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정책을 살펴본다. 이어서 현행 정책의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원만한 자녀양육을 지원할 수 있기 위함이다.

## 2. 중앙정부의 한부모가족 정책

### 1) 저소득 한부모가족<sup>3)</sup> 지원정책

정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크게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사업, 여성가족부의 복지급여 등 다양한 급여·서비스, 기타 부처의 감면혜택 및 서비스로 구분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복지급여, 복지자금대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득·주거·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도 저소득

2) 김승권 외(2011), 취약·위기 및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구축과 자립지원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여기서의 한부모가족이란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이거나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고,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하며, 조손가족은 별도 논의함.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2012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

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표 1. 2012년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현황

구분	기초생활수급가구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구	기초생활수급 청소년한부모가구	
세부 지원 내용	긴급지원	• 긴급생계급여(복지부) • 장제급여(복지부)	• 좌동 • 좌동
	소득지원	• 생계급여(복지부) • 보장시설생계급여(복지부) • 통신요금감면(방통위)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할인(지식경제부)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주거지원	• 주거급여(복지부): 시설입소 수급자 제외 •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국토해양부):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여성가족부)	• 좌동 • 좌동 • 좌동: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포함
	자립지원	• 자활급여(복지부) • 자활사업(복지부) • 취업성공 패키지(고용노동부) • 복지자금대여(여성가족부)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청소년한부모 대상 복지급여(여성가족부): 자산형성계좌지원(월5만원), 자립촉진수당(월10만원)
	의료지원	• 의료급여 1/2종(복지부)	• 좌동 •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복지부)
	양육지원	• 해산급여(복지부) • 교육급여(복지부) •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비 감면(여성가족부) •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연간 450만원 이내 지원 •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여성가족부)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 포함
	정서지원	• 취약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여성가족부)	• 좌동: ~180%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 좌동 • 좌동

자료: 1)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 여성가족부(2012), 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3)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자활사업 안내; 4) 지식경제부(2011), 전기요금 동결, 주택용 2% 인상 보도자료; 5) 여성가족부(2012), 201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6)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cc.go.kr>; 7)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8)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표 2. 2012년 최저생계비 100~130%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현황

구분	최저생계비 100~130% 이하 가족		
	최저생계비 100~130% 이하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 100~13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세부 지원 내용	긴급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소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요금감면(방통위)</li> <li>•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할인(지식경제부)</li> <li>• 복지급여(여성가족부):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좌동</li> <li>• 좌동</li> </ul>
	주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국토해양부): 한부모가족</li> <li>•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여성가족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좌동: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포함</li> </ul>
	자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사업(복지부)</li> <li>• 취업성공 패키지(고용노동부): 최저생계비 150% 이하 대상</li> <li>• 복지자금대여(여성가족부): 최저생계비 150%이하 한부모가족 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좌동: ~150% 이하 대상</li> <li>• 좌동: ~150%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li> <li>• 청소년한부모 대상 복지급여(여성가족부): 자산형성계좌지원(월20만원, ~150% 이하)</li> </ul>
	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료 지원(복지부): 월소득 360만원 이하 한부모가정에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10%~30% 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복지부)</li> </ul>
	양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비 감면(여성가족부)</li> <li>•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연간225만원 지원</li> <li>•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여성가족부)</li> <li>• 복지급여(여성가족부): 아동양육비(월5만원), 추가아동양육비(월5만원), 학용품비(월5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좌동</li> <li>• 좌동: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 포함</li> <li>• 좌동</li> <li>• 청소년한부모 대상 복지급여(여성가족부, ~150% 이하): 아동양육비(월15만원으로 확대), 검정고시학습비(연154만원이내), 고교생 교육비(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li> </ul>
정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li> <li>•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여성가족부)</li> <li>•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여성가족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 ~180%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li> <li>• 좌동</li> <li>• 좌동</li> </ul>	

자료: 1)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 여성가족부(2012). 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3)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자활사업 안내; 4) 지식경제부(2011). 전기요금 동결, 주택용 2% 인상 보도자료; 5) 여성가족부(2012). 2012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6)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cc.go.kr>; 7)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8)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1) 소득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득지원은 한부모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기준에 따라 모든 가구에 게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한부모가족만을 위한 정책은 여성가족부의 복지급여뿐이다. 복지급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명시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지원정책으로,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의 일환인 생활보조금 연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sup>4)</sup>

한편, 지식경제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기요금 할인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월 8천원(정액), 차상위계층 월 2천원(정액)이며<sup>5)</sup>,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123.5원/m<sup>3</sup>, 차상위계층 42.5원/m<sup>3</sup>이다(여성가족부, 2011).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동전화 가입비면제, 기본료면제,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50%감면(최대 21,500원) 혜택을 제공하고, 차상위계층에게는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를 감면한다(방송통신위원회, 2012).

(2) 주거지원

국토해양부는 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있다(국토해양부, 2012). 또한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하여,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준비가 미흡한 한부모가족 등이 일정기간동안 시설에 입주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sup>6)</sup>

(3) 자립지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각각 자활사업, 취업성공 패키지를 운용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를 제공하는 자활인큐베이팅,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지만, 대상선정시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한다.<sup>7)</sup>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계획에 따른 취업상담과 취업알선 등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자가 취업계

4) 여성가족부(2012). 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 지식경제부(2011). 전기요금 동결, 주택용 2% 인상 보도자료.  
 6) 여성가족부(2012). 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7)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획을 수립할 시 5만원의 실비를,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최대 월 20만원의 생계지원을, 취업에 성공하여 근로상태를 유지할 경우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다. 또한 참여자가 취업을 통한 자립에 성공하여 탈수급 할 경우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sup>8)</sup>

여성가족부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한 복지자금을 대여한다. 복지자금대여는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인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제도로, 무보증대출의 경우 가구당 최대 1,200만원, 보증대출의 경우 가구당 최대 2,000만원, 담보대출의 경우 가구당 최대 5,000만원의 자금을 대여한다. 자금대여 조건은 연 이율 3%이며, 상환기간은 최초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이다.<sup>9)</sup>

#### (4) 의료지원

보건복지부는 월소득 360만원 이하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고 있으며, 감면율은 소득에 따라 10~30% 차등 적용한다.<sup>10)</sup>

#### (5) 양육지원

여성가족부는 복지급여의 일환으로 아동양

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다. 자녀양육비는 한부모가정의 12세 미만 아동 1명당에게 월 5만원씩 제공되고, 추가 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5만원씩, 학용품비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용품비 월 5만원씩 제공된다. 또한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을 지원하고, 비동거 부(모)가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sup>11)</sup>

이외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225~450만원 이내 등록금을 지원하며<sup>12)</sup>, 여성가족부는 소득기준에 따라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sup>13)</sup>

#### (6) 정서적 지원

여성가족부의 '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12)에 의하면 정서적 지원의 일환으로, 취약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8)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9) 여성가족부(2012). 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el.go.kr>

11) 여성가족부(2012). 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tscholar.kosaf.go.kr/>

13) 여성가족부(2012). 2012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있다.

취약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는 최저생계비 180% 이하 한부모가족(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포함)을 대상으로 심리·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담, 교육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자립·자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가족역량강화서비스지원단(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사업 업무매뉴얼 개발·보급, 교육 및 슈퍼비전, 사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은 미혼모·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은 미혼모·부자의 정서적 불안감 해소,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해소, 자존감 향상, 자립심 강화, 재사회화를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출산 및 양육 시 병원비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이외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실시,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을 통해 미혼모·부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돕고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입소자의 심리·정서적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생활의 안정과 조기 자립을 돕고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든 신규 입소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치료기관 및 병원 연계, 집단상담 및 치료, 가족치유캠프 등을 제공한다.

## 2)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sup>14)</sup> 지원정책

### (1) 자립지원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 청소년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자산형성계좌 지원금 월 5만원, 차상위계층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는 월 20만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24개월 이하 자녀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을 제공한다.

### (2) 양육지원

여성가족부는 차상위계층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만12세미만 아동을 위한 아동양육비를 월 15만원으로 확대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에게 검정고시 학습비를 연 154만원 이내로 제공하며, 청소년 한부모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한다.

### (3) 의료지원

보건복지부는 2011년 만 18세 이하 미혼모자 시설 입소 산모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1회 임신 당 의료비 120만원을 지원한다.

## 3) 조손가족<sup>15)</sup> 지원정책

여성가족부는 조손가족 통합지원서비스(조

14)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말함.

손가족 희망사다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최저생계비 180% 이하 저소득 조손가족에게 학습·정서지원, 생활가사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움지도사는 초·중·고등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손자녀에게 학습동기·목표를 점검하고, 기초학습·자기주도학습·부진교과목을 지도하며, 일상생활지도, 멘토·멘티 서비스 등 다양한 학습·정서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조부모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족에게 키움보듬이가 파견되어 조부모의 활동보조, 손자녀 긴급 일시돌봄 등 전반적인 생활가사를 지원한다. 이외에 아동의 자존감 향상,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조손가족 통합지원서비스 외에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동일하게 조손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복지급여를 지원하며, 보건복지부도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동일하게 조손가족에게도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있다.

### 3.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정책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정책을 소득지원, 주거지원, 자립지원, 의료지원, 양육지원, 복지시설 및 시설거주자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소득지원

소득지원은 크게 다음 다섯 유형이다. 먼저 생활안정금의 성격을 갖는 가계지원비(대구, 광주, 울산, 경기, 전남, 경남)와 동절기생활안정 지원(인천,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외에도 한부모가족 피복비 지원(전북), 한부모 장애가정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전남), 미혼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경남) 등도 있었다.

#### 2) 주거 및 자립지원

세대주 기술교육훈련비 등 자립 지원(대구, 인천, 광주,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이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일부지역에서의 지원정책으로 주거지원(부산, 울산),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경남), 청소년미혼모 대안학교 운영 지원(경기) 등이 있었다.

15) 조손가족이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을 말함.



### 3) 의료지원

의료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은 일부 지역에서만 추진되고 있었는데, 세대주 건강검진 등 의료비 지원(대구, 경남)과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영양비 지원(경남)이 대표적이었다.

### 4) 양육지원

한부모가족 대상의 지원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이었다. 비교적 많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사업으로는 자녀 교통비 지원(서울, 부산, 인천, 전북, 전남), 자녀 교재·학용품비 지원(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인천,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교복비 지원(인천, 경기, 강원, 전북, 제주), 자녀 교육비 지원(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남, 제주) 등이었다. 그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수학여행비 지원(충북, 충남, 전북), 고교입학 준비금 지원(부산),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강원, 전북, 경북), 자녀 대학학자금 지원(전남, 제주), 미혼모가족 돌봄도우미 파견(경남) 등이 있었다. 아울러 포괄적으로 ‘양육비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추진하는 지역(전남)도 있었다.

###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시설거주자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시설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은 일부지역에서만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는 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전북)이 있었고, 시설거주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한부모가족 캠프 지원(대구, 전북)과 시설 생활자 지원(대구, 전북)이 있었으며, 이들 시설거주자들이 퇴소시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는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전북)과 미혼부모자시설 퇴소자 피복비 지원(대구) 등이 있었다.

## 4. 현행 한부모가족 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제언<sup>16)</sup>

본 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 사업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하여 많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원수준 또한 크게 높아졌음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부모가족의 요구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은 ‘재가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시설한부모가족 실태조사’<sup>17)</sup>, ‘조손가족 실태조사’<sup>18)</sup>(여성가족부, 2010) 등에서 잘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

16) ‘김승권 외. 취약·위기 및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구축과 자립지원 방안 연구’의 ‘제8장 취약·위기 및 한부모가족의 새로운 정책 아젠다 및 과제’의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17) 이상 두 조사는 ‘김승권 외(2011). 취약·위기 및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구축과 자립지원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조

18) 이 조사는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참조.

**표 3.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 대상 주요 자체사업(2011년 기준)**

시도	사업
서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학용품비 지원
부산	한부모가족 교통비 및 학용품비 지원, 부자가족 주거지원, 고교입학 준비금 지원
대구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한부모가족세대주 건강검진비 지원, 한부모가족세대주 기술교육훈련비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자 지원, 미혼모자시설 퇴소자 피복비 지원, 시설 모자세대 하계수련회 지원
인천	한부모가족자녀 교육지원(초등생 학용품비, 중고생 학습비, 중고생 교통비, 중고생 교복비),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난방연료비, 월동대책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강화(취업·창업을 위한 기술교육)
광주	한부모가족자립지원, 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
대전	자녀생활교육비 지원, 초중고입학생 학용품비 지원, 월동비 지원
울산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가계지원비 지원),
경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초중고생 학습재료비, 중고학교 신입생 교복비, 생필품비), 청소년미혼모대안학교 운영 지원
강원	한부모 생활안정지원(초중고생 학습지원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대학입학금, 난방비)
충북	난방비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충남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월동비, 한부모 기술교육비, 자녀 학용품비, 자녀 능력개발비, 참고서비, 수학여행비)
전북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세대자립금, 월동비, 피복비, 대학입학금, 교복비, 참고서비, 학용품비, 교통비, 수학여행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퇴소자 자립정착금, 시설종사자수당, 세대김장비, 피복비, 캠프지원)
전남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금 지원, 한부모가족 대입자녀 학자금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중고생자녀 교통비 지원, 한부모 장애가정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경북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대학입학금 지원, 한부모가족 학생학용품비 지원,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지원
경남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미혼모가족 돌봄도우미 파견,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 미혼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생활자립금 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난방연료비 지원, 건강관리비 지원, 중학생 방과후 자녀 학습비 지원
제주	직업훈련생계비 지원, 월동준비금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자녀학습비 지원, 중·고교 신입생교복비 지원, 대학 신입생등록금 지원

립지원을 강화하고 원만한 자녀양육을 위한 정책추진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정책의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실직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자립을 위한 「한부모 취업+돌봄 패키지프로그램」 추진한다. 즉, 차(차)상위계층 한부모의 건강한 자립과 복지급여의존의 해소를 위하여 근로를 통한 자

립을 원하는 한부모에게 생계급여보조와 자녀 돌봄의 현물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대상은 최저 생계비의 130~160%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급여기간은 기본 4년에 자립정도에 따라 최장 2년 연장이 가능토록 하여 최고 6년이 되도록 함으로써 확실한 자립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둘째,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화」 지원사업

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사업은 현재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거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어야 한다. 주거지원은 주택제공과 주거비(임대료 등)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며, 주택제공은 한부모가족끼리 집단거주토록 하지 않고, 각 지자체가 일반 주거지역에 주택을 1~2채 구입 또는 임대하여 제공토록 함으로써 '낙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이혼예방 차원의 건강가족 및 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한다. 즉, 부부관계 기술향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책임감 있는 부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이러한 내용에는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자녀에게 양육비 혹은 양육을 제공하지 않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한부모 고등교육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자립능력을 극대화하고 취업후 상환토록 한다. 즉, 고등교육을 지속하길 원하는 한부모 대상으로 「한부모 고등교육을 위한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고등교육 이수한 한부모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며, 궁극적으로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부모들의 실질적 욕구를 파악하여 현행 제도 하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자녀 양육비, 교재 구입비, 실습비 등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학자금 대출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실시중).

다섯째, 이혼자녀의 권리보장이 강화되고, 이혼숙려기간의 자녀양육 및 생활비 보장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즉, 이혼자녀의 복리를 반영한 자녀양육권 지정과 부모 면접교섭권이 강화

되어야 할 것이며, 이혼숙려기간에 재산분할과 자녀양육 등 이혼 후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여섯째,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호와 교육을 필요로 하는 각급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토요학교' 운영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의 제한없이 전면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Wee 프로젝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생미혼모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추진한다. 즉, Wee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1차 안전망(Safe-net)을 통해 미혼모 위험군 학생의 조기발견·예방과 학교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고, 학생미혼모 등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를 위해 '가정형, 단기 기숙형' Wee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한다.

여덟째,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 대상 지역 사회중심의 종합적·체계적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추진이 효과적이므로 전문상담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주축으로 전문적인 개인상담을 실시하고, 미혼모 가족, 미혼모자시설, 의료기관, 대안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부자가정 흡혈퍼 및 가사양육 멘토 파견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정보부족, 모(母)의 역할 수행 등으로 의식주와 관련된 가족의 보호기능이 매우 열악한 부자가정의 생활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부자가정 한부모의 자녀양육 관련 자조모임 결성 및 지원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